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직속기관 “949” 을 “960” 으로, 사업소 “376” 을 “380” 으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2180호 1995년 2월 17일) 제3항 중 “본청 정책보좌관 3명과”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은 1995년 10월 30일부터, 사업소 정원은 1995년 10월 25일부터 각각 적용한다.